

## 무배당 Chubb 가정종합보험1907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장기손해보험 / 장기종합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Chubb 가정종합보험1907
3. 보험의 목적
  - 피보험자의 신체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 동산 및 부동산 (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
  - 법률상의 배상책임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 (기본계약)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 - (기본계약)도난보장(주택) - 임차자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 풍수재보장특별약관(비특수건물) - 풍수재보장특별약관(특수건물) -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Ⅱ특별약관 - 화재대물배상책임보장(특수건물)특별약관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특별약관 -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특별약관 - 지진손해보장 특별약관 -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특별약관	10년만기	-		
- 강력범죄(일상생활중)보장특별약관 -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20%이상후유장해보장 - (기본계약)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장 - (기본계약)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장 - 화재·붕괴·침강·사태사망보장특별약관 - 화재후유장해보장특별약관 - 붕괴·침강·사태후유장해보장특별약관 -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보장특별약관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보장특별약관 - 5대골절진단보장특별약관 - 5대골절수술보장특별약관 - 화상진단보장특별약관 -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특별약관 - 화상 입원일당보장특별약관 - 화상 종합병원입원일당보장특별약관 -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특별약관 -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최초 1회한)보장특별약관 - 운전자패키지보장특별약관 - 화재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 화재별금보장특별약관	10년만기	20~70세	전기납	월납 연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특별약관</li> <li>-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보장특별약관</li> <li>-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보장특별약관</li> <li>- 홀인원비용보장특별약관</li> <li>- 알바트로스비용보장특별약관</li> <li>-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별약관</li> <li>- 벌금보장특별약관</li> <li>-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II특별약관</li> <li>-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II특별약관</li> <li>- 가족화재벌금보장특별약관</li> </ul>				
--	--	--	--	--

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갱신특약에 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적용함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평균공시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 되는 경우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나.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변경된 보장내용을 적용함.
  - 다. 회사는 가.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 라. 가.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 마. 회사는 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 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17. 기타

- 회사는 통신판매(TM, 홈쇼핑 등)시 효율적인 상품설명을 위하여 판매플랜을 설정하여 판매할 수 있음
- 플랜의 선택은 계약자의 결정에 의하며, 플랜이 포함하고 있는 선택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제외될 수 있음
- 회사는 임차자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보장임을 청약시점에 계약자에게 인식하도록 함
- 운전자패키지보장특별약관/별금보장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II특별약관/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II특별약관은 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 운전자패키지보장특별약관과 별금보장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II특별약관/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II특별약관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 화재별금보장 특별약관, 가족화재별금보장 특별약관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 화재별금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운영함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 고정으로 운영함
-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하로 운영함
-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운영함
-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운영함
-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운영함
- 홀인원비용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운영함
- 알바트로스비용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운영함
-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고정으로 운영함